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① 사 건	전남행심 제2022-104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② 이 름		
	③ 주 소		
대 리 인	④ 이 름		
	⑤ 주 소		
⑥ 피청구인		⑦ 참 가 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⑨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3. 11.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이행한다.		
⑩ 이 유	별지 1에 적은 내용과 같다.		
⑪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2. 7. 29.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별지 1]

이 유

【제2022-104호,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의무이행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시 ○○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2.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① 주차장을 보행자 통로로 전용, ② 헬룸(유수검지장치실)을 개인 휴게실로 사용하여 주차장 일부 부지 사용 불가, ③ 노인정을 미화원 휴게시설로 활용, ④ 장애인주차구역 내 건축자재 적재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3.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 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3. 11.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이행한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면 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나. 피청구인

1) 이 사건 민원 ①~③에 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주차장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배치한 사실과 횡령(유수검지장치설)을 미화원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하면서 그 출입구 측에 주차금지 협조 표지판을 배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횡령(유수검지장치설) 및 주차장의 기능과 유형을 변경한 사실은 없으며 2022. 4. 8. 현장점검 결과 횡령(유수검지장치설) 안 미화용품 및 주차장 주차금지 표지판이 제거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 민원 ④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2. 3. 15. 건축자재를 적재한 업체에게 과태료 10만원(주차 방해 50만원)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다.

4. 관계 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5. 판 단

가. 인정 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22. 3. 1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민원을 신청하였다.

민원제목	불법으로 전용하여 용도 외 건축물 사용 조사요청
내 용	

--	--

민원제목	장애인주차구역에 건축자재를 적재하여도 되는 건가요?
내 용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회신일	내 용
2022. 3. 16.	귀하가 신고하신 장애인주차구역 내 아파트 건축물 자체 물건적재건은 동일 신고된 것으로 위반일시 및 장소가 중복됩니다. 이전 건으로 행정 처분(과태료부과) 진행 중에 있으며 중복접수된 건은 이중부과하지 않기에 중복접수 처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9.	민원 사항을 귀 아파트 관리주체에 전달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아파트 단지 내 공용부분의 물건 적재로 인한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생활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청구인은 2022. 4.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후속 민원을 신청하였다.

민원제목	공동주택관리법 63조에 따른 공문에 대하여 보행자통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내 용	
--------	--

4) 피청구인은 2022. 4. 8. 현장점검을 하고, 2022. 4.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내 용
가. 건축과-○○(2022. 3. 19.)호의 공문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니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시느바, 나. 2022. 4. 8.(금) 민원 현장을 점검한 결과, 불임(개선 전·후 사진대지)과 같이 조치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청구인은 2022. 4. 1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1) 관계 법령

별지 2에 적은 내용과 같다.

2) 판단

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의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직접적 상대방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제3자에 대해서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과태료 관련 규정이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제3자가 얻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목적 달성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3자가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한 청구로 부적법하다.

나) 시정명령에 대하여

(1)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에 필요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피청구인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피청구인이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명령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단독으로 이를 요청한 바 이 사건 청구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심판 대상의 존부 여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청구인의 행정청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않고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명령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은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한 것이 아닌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은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결국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단독으로 시정명령에 관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자격) ①~② (생략)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6. (생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⑧ (생략)